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475
----------	-------

발의연월일 : 2019. 9. 16.

발 의 자 : 이석현 · 김철민 · 기동민  
신창현 · 안규백 · 박 정  
이규희 · 윤후덕 · 안호영  
임종성 · 소병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청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임.

그런데 최근 실시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확인하기보다 후보자 가족의 과도한 신상털기가 이루어져 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불필요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정책 수행 역량은 검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본 취지에 맞게 실시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대한 청문은 비공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대한 청문은 비공개한다.</u></p>